

〈譯註〉

『舊唐書』 陳少遊 · 韓滉 列傳 역주

정 병 준 *

〈목차〉

- I. 『구당서』 권126, 진소유전
- II. 『구당서』 권129, 한황전

[해설]

당대 변진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反側之地'라고 하여 스스로 藩帥를 세습하면서 반독립적 태세를 취한 변진들이다. 둘째는 '順地'라고 하여 당조의 명을 받드는 변진들이다. 셋째는 앞의 두 부류에 속하지 않고 형세에 따라 움직이는 이른바 '중간지대'의 변진들이다. 그 동안의 변진 연구는 앞 두 부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중간지대' 변진들을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역주는 '중간지대' 변진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작성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I. 『구당서』 권126, 진소유전¹⁾

진소유는 [河北] 博州²⁾人이다. 조부 [陳]儼은 安西副都護였다. 부친 [陳]慶은 右武衛兵曹參軍을 지냈는데, 진소유로 인해 여러 차례 추증되어 工部尙書가 되었다. 진소유는 어렸을 때 총명하고 말을 잘하였는데, 처음에 莊·列·老子를 익혀 崇玄館 學生이 되니 무리들이 推引하여 경전을 강해하게 하였다. 그때 同列 가운데 개인적으로 經義를 익힌 자가 있었는데, [진소유가 강해하기 위해] 升坐하는 날 어려운 점을 물으려고 기약하였다. 모임이 있는 날 진소유가 단정하고 예의바르게 升坐하여 音韻이 淸辯하였으므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았다. 인용한 文句가 모두 다른 뜻을 겸한 것이어서 학생들이 응대할 수 없었다. 大學士 陳希烈이 심히 歎賞하고 또 같은 문중[同宗]이라고 하여 매우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道舉³⁾]에 급제한 후 [山南西道] 渝州 南平⁴⁾에 보임되었는데, 다스림으로 심히 명성을 얻었다. [肅宗] 至德 연간(756~758)에 河東節度 王思禮가 주청하여⁵⁾ 參謀로 삼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大理司直·監察殿中侍御史·節度判官에 제수되었다. [숙종 혹은 代宗] 寶應 원년(762)⁶⁾에 조정으로 불러 들어가 金部員外郎이 되었다. 곧이어 侍御史·迴紇糧料使

1) 『구당서』 권126, 진소유전, 3562~3566쪽. 정병준, 「唐 德宗代 여러 反亂과 江淮 藩鎮의 動搖 - 淮南節度使 陳少遊의 태도를 중심으로」, 『중국고증세사연구』 60, 2021 참조.

2)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博州 조, 1495쪽.

3) 傅璇琮, 「總論唐代取士各科」, 『唐代科舉與文學』, 陝西人民出版社, 34~37쪽 참조.

4) 『구당서』 권39, 지리지2, 山南西道, 渝州 南平縣 조, 1542쪽.

5) 왕사례가 하동절도사를 지낸 것은 乾元 2년(759) 7월부터 이듬해인 건원 3년 5월까지이다(정병준, 「營州城傍高麗人'王思禮」, 『고구려연구』 19, 2005, 279~280쪽). 이로 볼 때 왕사례가 진소유를 위해 주청한 것은 건원 2년일 가능성이 크다.

6) 같은 해(762) 4월 숙종이 죽고 代宗이 즉위하였다.

에 제수되었다가 檢校職方員外郎으로 바뀌었다. 사직[使]에 충임되면서 郎官을 檢校한 것은 진소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듬해(763)에 僕固懷恩⁷⁾이 [대종에게] 주청하여 河北副元帥判官·兵部郎中·兼侍御史로 삼았다. 晉州刺史로 遷하였다가 同州刺史로 바뀌었는데, 일을 보기도 전에 다시 賚·鄭 2주 자사에 [차례로] 임명되었다. 진소유는 다스릴 때 權變이 뛰어났는데, 당시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幹濟]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財貨를 많이 거두어 權倖과 연줄을 맺고 이로 인해 빈번히 遷擢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澤潞節度使 李抱玉⁸⁾이 表를 올려 副使·御史中丞·陳鄭二州留後로 삼았다.⁹⁾

[대종] 永泰 2년(766) 이포옥이 또 상주하여 隴右行軍司馬에 임명되며 檢校左庶子에 배수되고 이전과 같이 中丞을 겸하였다. 그 해에 桂州刺史·桂管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진소유는 嶺 너머[嶺徼]가 遐遠하므로 近郡에 임명되고자 하였다. 당시 中官 董秀가 樞密을 관장하며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진소유가 그 마을[里]에 숙박하며 그가 돌아오는 것[下直]을 기다려 저녁 무렵에 만나 조용히 말하길 “七郎께서는 집안에 사람

7) 『자치통감』 권22, 대종 보응 원년(762) 11월 조, “郭子儀以僕固懷恩有平河朔功, 請以副元帥讓之. 己亥, 以懷恩爲河北副元帥, 加左僕射兼中書令·單于·鎮北大都護·朔方節度使”(7136쪽).

8) 『신당서』 권138, 李抱玉傳, “[肅宗]進至右羽林大將軍·知軍事, 擢陳·鄭·潁·亳節度使. …… 代宗立, 兼澤潞節度使, 統相·衛·儀·邢十一州兵”(4619쪽); 『자치통감』 권22, 대종 보응 원년(762) 7월 조, “以郭子儀都知朔方·河東·北庭·潞儀澤沁陳鄭等節度行營 [胡三省 注: 時以潞·儀·澤·沁·陳·鄭爲一鎮, 以李抱玉爲節度使. 蓋抱玉先以陳鄭節度使討賊在行營, 李光弼邙山之敗, 抱玉奔澤州, 陳鄭爲賊所隔, 朝廷因使之節度潞·儀·沁·澤四州] 及興平等軍副元帥”(7129~7130쪽).

9) 『구당서』 권122, 裴胄傳, “陳少遊陳鄭節度留後, 奏胄試大理司直. 少遊罷, 隴右節度李抱玉奏授監察御史, 不得意, 歸免. 陳少遊爲宣歙觀察, 復辟在幕府, 抱玉怒, 奏貶桐廬尉. …… 淮南節度陳少遊奏檢校主客員外·兼侍御史·觀察判官. 尋爲行軍司馬, 遷宣州刺史”(3507~3508쪽).

이 몇 명인지요? 또 매월 소비하는 것이 얼마인지요?”라고 하니 동수가 말하길 “오랫동안 황제 옆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에 누를 끼친 것이 매우 크다. 또 근래에 물가가騰貴하여 한 달에 1천여 貫을 더 쓴다”라고 하였다. 진소유가 말하길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俸錢으로는 며칠을 넘기기도 부족하고 그 나머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바야흐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심으로 재물을 제공하고 다만 [당신은] 마음으로 그를 보살핀다면 진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저 진소유는 비록 재주가 없지만, 청컨대 혼자 오로지 七郎의 경비를 제공하여 매년 錢 5만 貫을 바치고 싶다. 지금 大半이 있는데, 청컨대 받아주신다면 나머지는 官에 이른 후 이어서 보내겠다. 貴人の 勞慮를 덜어드리는 것이 또한 가하지 않겠는지요?

라고 하였다. 동수는 기대를 넘는 일이라고 하며 자못 흡족해하고 이로 인해 그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진소유는 말이 끝나자 울면서 말하길 “南方은 덮고 풍토병이 있으므로[炎瘴] 이별하는 것이 심히 슬프지만 단지 살아 돌아와 顏色를 다시 뵈 수 없을까 두렵다”라고 하자 동수가 황급히 말하길 “中丞은 美才이므로 遠官에 합당하지 않다. 청컨대 편안히 10일을 기다리면 미력을 다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당시 진소유는 또 이미 元載의 아들 [元]仲武에게도 뇌물을 주었다. 동수와 원재가 內外에서 引薦하여 며칠 후 宣州刺史·宣歙池都團練·觀察使에 배수되었다.

[대종] 大曆 5년(770) [9월] 越州刺史·兼御史大夫·浙東觀察使로 바뀌었다.¹⁰⁾ 8년(773) [10월] 揚州大都督府長史·淮南節度·觀察使로 승진

10) 『文苑英華』 권409, 中書制誥, 諸使2, 團練使, 「授陳少遊浙江東道團練使制」, 中華書局, 2076쪽; 『구당서』 권11, 大종본기, 大曆 5년 9월 조, “以宣歙池等州都團練觀察使·宣州刺史·兼御史中丞陳少遊充浙江東道團練觀察使”(297쪽).

[遷]하고 또 銀青光祿大夫가 더해지며 潁川縣開國子로 봉해졌다.¹¹⁾ 부임하는 곳마다 마음을 다해 다스렸지만[綏輯], 술수로 정치를 하고 은혜를 적게 행하니 胥吏가 직무를 다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또한 편안해 하였다. [대력 11년(776) 10월 임인일 회남절도사 진소유가 (汴宋留後) 李靈耀와 汴州에서 싸워 패배시켰다. 병오일 (魏博節度使) 田承嗣가 병사를 보내 이영요를 구원하였으나 李忠臣이 (永平 변진의 滑州) 匡城(縣)에서 패배시켰다. 갑인일 이영요가 주살되었다].¹²⁾

朝廷이 多事해지자 [德宗 建中 3년(782) 4월] 奏請하여 本道 兩稅錢을 1천마다 2백을 늘렸다. 이로 인해 [5월] 諸道에 조서를 내려 모두 淮南과 같게 하였고 鹽 1斗마다 1백 文을 더 거두었다.¹³⁾ 진소유는 10여 년 동안 大藩을 세 번 다스렸는데, 모두 天下의 부유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徵求하고 貿易하여 쉬는 날이 없었으며 財寶를 斂積하여 巨億萬을 쌓아 權貴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고 文雅·清流의 士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이전에 원재와 연을 맺어 매년 金帛 약 10만 관을 주었고 또 권력을 가진 中官 駱奉先·劉清潭·吳承倩 등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11) 『구당서』 권11, 대종본기, 대력 8년 10월 조, “以浙東觀察使·越州刺史陳少遊爲揚州大都督府長史·充淮南節度使”(303쪽).

12) 『신당서』 권6, 대종본기, 대력 11년 10월 조, 179쪽. 당시 상황은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正己에 대해 -代宗時期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4, 2002, 120~121쪽 참조.

13) 『唐會要』 권83, 租稅上, 건중 3년 5월 조, “初加稅. 時淮南節度使陳少遊, 請于當道兩稅錢, 每一千加稅二百, 度支因請諸道悉如之”(上海古籍出版社, 1820쪽); 『자치통감』 권227, 건중 3년 4월 조, “淮南節使陳少遊奏, 本道稅錢每千請增二百. [호삼성 주: 唐中世以後, (淮南道)當統揚·楚·滁·和·濠·廬·壽·光·蘄·黃·申·安·舒等州. 稅錢, 謂田稅及商稅錢也] 五月, 丙戌, 詔增他道稅錢皆如淮南. 又鹽每斗價皆增百錢. [호삼성 주: 鹽每斗價幾何, 而頓增百錢, 人誰堪之]”(7329~7330쪽); 『구당서』 권48, 食貨志上, “[建中]三年五月, 淮南節度使陳少遊請於本道兩稅錢每千增二百, 因詔他州悉如之”(2093쪽).

美聲이 中禁에 전해졌다. 후에 元載가 재상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過犯를 저질러 점차 [황제의] 疑忌를 받는 것을 보고, 진소유가 또한 점차 그를 멀리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재의 아들 [元]伯和가 揚州로 貶官되자 진소유가 길으로 그와 交結하면서도 속으로는 사람을 시켜 그 過失을 엿보게 하고 몰래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代宗이 충성스럽다고 여기고 더욱 두텁게 대하였다.

上(즉 德宗)이 즉위하여 檢校禮部·兵部尙書를 이어서 더해 주었다. 建中 3년(782) 李納이 反叛하자 진소유가 병사를 보내 徐·海 등 卅를 함락시켰다가 곧 버리고 물러나 [泗州]¹⁴⁾ 盱眙[縣]¹⁵⁾에 주둔하였다. 또 檢校左僕射를 더해주고 實封 300호를 하사하였다. 그 해 [11월] 同平章事가 더해졌다.¹⁶⁾ 關播는 일찍이 진소유의 빈객이 되었고,¹⁷⁾ 盧杞는 이른 시기에 진소유와 함께 僕固懷恩의 使府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그 官秩을 더해주었다. [건중 4년 6월 '四王의 亂'을 토벌하기 위해 진소유는 다른 번진들과 함께 淮西節度使 이희열을 둘러싸고 있었다].¹⁸⁾

14) 『자치통감』 권229, 건중 4년 11월 조, 호삼성 주, “盱眙, 漢縣, 唐初屬楚州, 建中四年, 度屬泗州”(7378쪽).

15) 『구당서』 권40, 淮南道, 楚州 조, 1573쪽.

16) 『당회요』 권1, 帝號上, 德宗神武孝文皇帝 조, “宰相三十五人, …… 使相二十人, 郭子儀·朱泚·李寶臣·李正己·李忠臣·梁崇義·李希烈·李懷光·陳少遊·李抱眞·張孝思·王武俊·劉玄佐·渾瑊·李納·嚴震·田緒·劉滋·韋臯·李師古”(9쪽); 『자치통감』 권227, 건중 3년 11월 조, “己卯朔, 加淮南節度使陳少遊同平章事”(7335쪽).

17) 『구당서』 권130, 關播傳, “陳少遊領浙東·淮南, 又辟爲判官, 歷檢校金部員外, 攝滁州刺史, 李靈曜阻兵, 跋扈於梁汴, 少遊自總兵鎮淮上, 所在盜賊蜂起, 播調閱州兵, 令其守備. …… 德宗登極, …… 盧杞以播柔緩, 冀其易制, 驟稱薦之. 尋遷吏部侍郎, 轉刑部尙書·知刪定. …… 建中三年十月, 拜銀青光祿大夫·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3627~3628쪽).

18) 정병준,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동양사학연구』 137, 2016, 22~23 쪽. 또 『구당서』 권 12, 덕종본기상, 건중 4년 6월 조, “初稅屋間架·除陌錢. 時馬

[건중] 4년(783) 10월 어가가 奉天으로 피난했을 때 度支汴東兩稅使 包佶이 揚州에 있으면서 아직 상황을 알지 못했는데, [11월]¹⁹⁾ 포길의 判官 崔沅이 급히 진소유에게 알렸다. 당시 포길이 관장하는 賦稅 錢帛 약 800만 貫 錢이 [양주에] 있었는데, 진소유는 賊이 京師를 점거하여 이른 시기에 收復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마침내 그 財物을 脅取하였다. 앞서 사신으로 파견된 判官 崔頴이 포길에게 가서 강제로 그 納給의 文曆을 수색하고 아울러 200만 貫 錢物을 軍費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게 하였다. 포길이 대답하여 말하길 “필요한 財帛은 반드시 敕命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며 주지 않았다. 최변이 발끈하며 말하길 “만약 中丞(즉 진소유)이 창기면 [그대는] 劉長卿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崔衆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장경은 일찍이 租庸使에 임명되어 吳仲孺에게 곤란을 겪었고, 崔衆은 供軍하면서 재화를 아끼다가 [李]光弼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최변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포길이 크게 두려워하며 감히 굳게 지키지 못하고 京師로 轉輸하여 보낼 財帛을 모두 진소유에게 빼앗겼다. 포길이 직접 만나려 하였으나 진소유가 저지하였기 때문에 길게 揖한 후 떠났고 화를 입을까 두려워 白沙로 달아났다. 진소유가 또 判官 房孺復²⁰⁾을 보내 부르

燧·李懷光·李抱眞·李芄屯魏縣, 李晟屯易定, 李勉·陳少遊·哥舒曜屯懷汝間, 神策諸軍皆臨賊境. 凡諸道之軍出境, 仰給於度支, 謂之食出界糧, 月費錢一百三十萬貫, 判度支趙贊巧法聚斂, 終不能給. 至是又稅屋, 所由吏秉筆持算, 入人廬舍而抄計, 峻法繩之, 愁嘆之聲, 徧於天下”(336쪽) 참조.

19) 『자치통감』 권229, 건중 4년 11월 조, “淮南節度使陳少遊將兵討李希烈, 屯盱眙, 聞朱泚作亂, 歸廣陵, 修塹壘, 繕甲兵. 浙江東·西節度使韓滉閉關梁, 禁馬牛出境, …… 以備車駕渡江, 且自固也. …… 鹽鐵使包佶有錢帛八百萬, 將輸京師. 陳少遊以爲賊據長安, 未期收復, 欲強取之. …… 少遊悉收其錢帛, …… 時南方藩鎮各閉境自守, 惟曹王臯數遣使問道貢獻. …… 由是往來之使, 通行無阻. [호삼성 주: 此謂江·浙往來之使]”(7378~7379쪽).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중국고중세사연구』 58, 2020, 228쪽; 同, 「唐 德宗代 여러 反亂과 江淮 藩鎮의 動搖」, 160~163쪽 참조.

20) 『구당서』 권111, 房孺復傳, 3325쪽.

니 포길이 더욱 두려워서 巡檢한다는 핑계로 급히 노를 저어 江을 건너갔는데, 妻子는 案牘 안에 숨겼다. [昇州] 上元[縣]에 이르자 다시 韓滉에게 拘留되었다. 포길은 앞서 병사 3천으로 財貨를 守禦하면서 高越·元甫에게 거느리게 하였는데, 진소유에게 모두 빼앗겼다. 포길을 따라 강을 건너자는 또 韓滉에게 억류되고 포길은 단지 胥吏만을 거느리고 江·鄂 등 州로 갔다. 포길은 彈丸 안에 表를 넣어 진소유가 財帛을 奪取한 일을 [조정]에 알렸다. 마침 진소유의 사신이 이어서 이르자 황제가 물어 말하길 “진소유가 포길의 財帛을 취하였는데, 무슨 일인가?”라고 하자 대답하여 말하길 “臣이 揚州를 출발한 후여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진소유는 나라의 守臣으로 혹 다른 도적을 막아 軍旅에 供給하기 위함일 것인데, 취한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당시 方隅가 阻絶되고 國命이 떨치지 못하고 있어 遠近에서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는데, 모두 聖情이 變通에 통달하여 萬里를 밝게 본 것이라고 하였다. 진소유가 후에 이를 듣고 이에 안심하였다.

[건중 4년(783) 12월] 李希烈이 汴州를 함락시킨 뒤²¹⁾ 공공연히[聲言] 江淮²²⁾를 습격하겠다고 하였다. [12월] 진소유가 두려워서 參謀 溫述을 보내 壽州를 지나 이희열에게 화해를 청하여[送款] 말하길 “濠·壽·舒·廬는 곧 성루[壘]를 없애고 무기를 넣고 갑옷을 거두어 指揮를 기다리겠다”라고 하였다.²³⁾ 진소유가 또 巡官 趙誥을 鄆州에 보내 李納과 結탁

21)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의 稱帝와 그 性格」, 『중국사연구』 126, 85쪽.

22) 『자치통감』 권225, 대종 대력 14년(779) 6월 조, “以戶部侍郎判度支韓滉爲太常卿, 以吏部尚書劉晏判度支. 先是晏·滉分掌天下財賦, [호삼성 주: 大曆六年, 韓滉判度支. 分掌財賦, 當在此時] 晏掌江南·山南·江淮·嶺南, 滉掌關內·河東·劍南, 至是, 晏始兼之. 上素聞滉掊克過甚, 故罷其利權, 尋出爲晉州刺史”(7260~7261쪽). 그 외 뒤이은 각주들에 인용한 江淮 용례 참조.

23) 『구당서』 권125, 蕭復傳, “先時, 淮南節度陳少遊首稱臣於李希烈, 鳳翔將李楚琳殺節度使張鎰以應朱泚, 鎰判官韋臯先知隴州留後, 首殺鬪叛卒數百人, 不

하였다.²⁴⁾ 그 해[이듬해인 興元 원년(784) 정월?]²⁵⁾에 이희열이 僭號하고 그 將 楊豐을 보내 거짓 赦書를 가지고 揚州로 달려가게 하였는데, 壽州에 이르러 刺史 張建封의 候騎에게 잡혔다. 장건봉이 中使 2인과 진소유의 判官 許子瑞에게 양풍을 廷에서 힐책하게 하고 참하였다.²⁶⁾ 이희열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즉시 그 大將 杜少誠을 거짓 僕射·淮南節度로 삼아 먼저 壽州를 평정한 후 廣陵을 취하게 하였다.²⁷⁾ 장건봉이 霍丘에 柵

應楚琳. 復江南使迴, 與宰相同對訖, 復獨留, 奏曰, '陛下自返宮闕, 勳臣已蒙官爵, 唯旌善懲惡, 未有區分. 陳少遊將相之寄最崇, 首敗臣節, 韋臯名宦最卑, 特建忠義, 請令韋臯代少遊, 則天下明然知逆順之理, 上許之'(3551~3552쪽); 『구당서』 권152, 張萬福傳, "在泗州時, 遇德宗幸奉天, 李希烈反, 陳少遊悉令管內刺史送妻子在揚州以爲質. 萬福獨不送, 謂使者曰, '爲某白相公, 萬福妻老且醜, 不足煩相公寄意, 終不之遣, 由是爲人所稱"(4076쪽).

- 24) 『자치통감』 권229, 건중 4년(783) 12월 조, "劉洽遣其將高翼將精兵五千保襄邑, [호삼성 주: 九域志, 襄邑, 在汴州東南一百七十里] 希烈攻拔之, 翼赴水死. 希烈乘勝攻寧陵, [호삼성 주: 九域志, 寧陵縣, 在宋州西四十五里] 江淮大震. 陳少遊遣參謀溫述送款於希烈曰, '濠·壽·舒·廬, 已令弛備, 韜戈卷甲, 伏俟指麾'. 又遣巡官趙誥結李納於鄆州. [호삼성 주: 濠·壽·舒·廬四州之地, 在淮·蔡東南. 送款, 遂言使弛備]"(7388쪽).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的 稱帝와 그 性格」, 85쪽, 89쪽 참조.
- 25) 『자치통감』 권229, 興元 원년(784) 정월 조, "李希烈遂即皇帝位, …… 希烈又遣其將楊峯, [考異: 舊傳作楊豐, 今從奉天記] 齎赦賜陳少遊及壽州刺史張建封. 建封執峯詢於軍, 腰斬於市, 少遊聞之駭懼. 建封具以少遊與希烈交通之狀聞, 上悅, 以建封爲濠·壽·廬三州都團練使. 希烈乃以其將杜少誠爲淮南節度使, 使將步騎萬餘人先取壽州, 後之江都, 建封遣其將賀蘭元均·邵怡守霍丘秋柵. 少誠竟不能過, 遂南寇蕲…黃, 欲斷江路. 時上命包佶自督江淮財賦, 泝江詣行在, 至蕲口, 遇少誠入寇. 曹王臯遣蕲州刺史伊慎將兵七千拒之, 戰於永安戍, …… 包佶乃得前. 後佶入朝, 具奏陳少遊奪財賦事, 少遊懼, 厚斂所部以償之. …… 於是希烈東畏曹王臯, 西畏李兼, 不敢復有窺江淮之志矣. [호삼성 주: 史言李希烈兵勢稍挫]"(7393~7394쪽).
- 26) 『구당서』 권140, 장건봉전, 3829~3830쪽. 정병준, 「唐 德宗代 여러 反亂과 江淮 藩鎮의 動搖」, 167~168쪽 참조.
- 27) 정병준, 「唐 德宗代 여러 反亂과 江淮 藩鎮의 動搖」, 169~170쪽 참조. 『구당서』 권131, 李臯傳, 3639~3640쪽. 여기에 보이는 伊慎의 활동 및 그 시점에 관해서는

을 견고하게 하고 엄히 守禁하니 두소성이 끝내 나아가지 못했다.²⁸⁾ [흥원 원년(784) 5월 淮南節度使 陳少遊에게 檢校司徒를 더하였다].²⁹⁾ [같은 해 11월]³⁰⁾ 후에 포길이가 입조하여 진소유가 財賦를 탈취한 事狀을 상세히 상주하자[具奏] 진소유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에 表를 올려 탈취한 포길이의 財貨는 모두 군대의 急用에 사용하였는데, 지금 청컨대 그 숫자대로 반납 하길 청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미 州府가 殘破되어 보전[上填]할 수 없자 腹心 孔目官 등과 設法하여 관내 백성에게 重稅하여 제공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劉洽이 汴州를 함락시키고 이희열의 거짓 起居注를 얻었는데, “某月日에 진소유가 表를 올려 歸順하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진소유가 듣고 부끄럽고 두려워 병이 나서 며칠 후 [12월]³¹⁾卒하였다. 나이는 61세였는데, 太尉로 추증하고 布帛을 부의로 주었으며 葬祭를 常儀대로 하였다.³²⁾

앞에서 興元 원년 정월이라는 시기를 보완한 것의 각주(『자치통감』 기사) 참조.

- 28) 『구당서』 권151, 伊愼傳, 4055쪽. 정병준, 「唐 德宗代 여러 反亂과 江淮 藩鎮의 動搖」, 169~170쪽 참조.
- 29)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흥원 원년 5월 조, “淮南節度使陳少遊加檢校司徒, 東川節度使李叔明太子太傅, 鎮海軍韓滉檢校右僕射”(342쪽).
- 30) 『자치통감』 권231, 흥원 원년 11월 조, “既而陳少遊聞滉貢米, 亦貢二十萬斛. 上謂李泌曰, 韓滉乃能化陳少遊貢米矣!, 對曰, 豈惟少遊, 諸道將爭入貢矣!. 吏部尚書·同平章事蕭復奉使自江淮還, [호삼성 주: 蕭復出使見二百二十九卷興元元年四月] …… 言於上曰, 陳少遊任兼將相, 首敗臣節, 韋臯幕府下僚, 獨建忠義, 請以臯代少遊鎮淮南, 上然之. …… 劉洽克汴州, 得李希烈起居注, 云某月日, 陳少遊上表歸順, [호삼성 주: 史究言陳少遊敗臣節之事] 少遊聞之慙懼, 發疾, 十二月, 乙亥, 薨, 贈太尉, 賻祭如常儀”(7449~7450쪽).
- 31)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흥원 원년 12월 조, “淮南節度使·檢校司空·平章事 陳少遊卒”(347쪽).
- 32) 『구당서』 권126, 진소유전에 대한 卷末의 ‘史臣曰’에서는 “少遊逐勢利隨時”(3568쪽)라고 평하였다. 또 『구당서』 권146, 杜亞傳, “興元初, 召拜刑部侍郎. 出爲揚州長史·兼御史大夫·淮南節度觀察使. 時承陳少遊征稅煩重, 奢侈僭濫之後, 又新遭王紹亂兵剽掠, 淮南之人, 望亞之至, 革劃舊弊, 冀以康寧”(3963쪽).

II. 『구당서』 권129, 한황전³³⁾

한황은 字가 太沖이고 太子少師 [韓]休³⁴⁾의 아들이다. 젊었을 때 정조가 있고[貞介]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蔭으로 解褐하여 左威衛 騎曹參軍이 되었다가 진출되어 [京兆府] 同官[縣]³⁵⁾ 主簿가 되었다. [肅宗] 至德 연간 초에 靑齊節度 鄧景山이 벽소하여 判官으로 삼고 監察御史·兼北海郡司馬에 제수하였으나 道路가 阻絶되어 山南으로 피신하였다. 採訪使 李承昭가 상주하여 判官으로 삼고 通州長史³⁶⁾와 彭王府 諮議參軍에 제수하였다. 등경산이 淮南으로 移鎮하여 또 表를 올려 賓佐로 삼았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殿中侍御史에 제수되어 京師로 달려갔다. 이에 앞서 한황의 형 [韓]法³⁷⁾이 知制誥³⁸⁾로서 王璵를 拜官하는 詞를 기초하면서 거짓 찬미를 하지 않았는데, 왕여가 자못 원한을 품었다. 그가 재상에 임명되자[秉政] 諸使가 한황 형제를 상주하면 반드시 중요하지 않는 관직 [冗官]을 제수하였다. 왕여가 재상을 파직하자 사람들이 군세다고 하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屢遷] 祠部·考功·吏部 세 員外郎에 이르렀다.³⁹⁾

한황은 청렴[公潔]하고 강직하며 吏道에 밝아 南曹를 관장한 5년 동안 문서[簿書]를 상세히 검토하여 사소한 것도 누락하지 않았다. [代宗] 大曆 연간에 吏部郎中⁴⁰⁾·給事中이 되었다. 그때 도둑이 富平令 韋當을 살해

33) 『구당서』 권129, 한황전, 3599~3603쪽.

34) 『구당서』 권98, 한휴전, “京兆長安人也”(3077쪽); 『신당서』 권126, 한휴전, 4432쪽.

35) 『신당서』 권37, 地理志1, 關內道, 京兆府·京兆郡 조, 963쪽.

36) 『신당서』 권126, 한황전, “通川郡長史”(4434쪽).

37) 『신당서』 권126, 한황전, “初, [韓]法知制誥, 當草王璵詔, 無借言, 衡之. 及當國, ……”(4434쪽).

38) 礪波護, 『唐代政治社會史研究』, 同朋舍, 1986, 170쪽, 205쪽, 232쪽 등 참조.

39) 『신당서』 권126, 한황전, “三遷吏部員外郎”(4434쪽).

하여 縣吏가 賊黨을 포획하였는데, 北軍에 소속되어 있었다. 監軍 魚朝恩은 武材가 있다고 하여 [황제에게 상주하여] 조서를 내려 그 죄를 용서하기를 청하였으나 한황이 몰래 疏를 올려 [어조은의] 상주를駁하니 賊이 마침내 사형에 처해졌다[伏辜]. 尙書右丞으로 옮겼다. [대력] 5년(770) 兵部選을 관장하였다.⁴¹⁾ 6년(771) 戶部侍郎·判度支가 되었다.⁴²⁾ 至德·乾元 이후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 賦稅의 한도가 없고 창고[帑藏] 출납은 대부분 관행대로 하였다. 한황이 나라 재정[司計]을 관장하자 청렴·근면하고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여 간교하게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下吏와 四方의 行綱⁴³⁾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였다. 또 마침 대력 5년 이후에는 蕃戎이 침입하는 것이 드물었고 매년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⁴⁴⁾ 한황이 능히 穀帛을 비축할 수 있어 창고가 점점 충실해졌다. 하지만 가혹하게 거두는 것이 너무 심하고 문서[案牘]를 覆治하면서 높은 규정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원망하였다. [대력 8년(773) 6월] 계해일 戶部侍郎·判度支 한황이 상주하여 安邑 鹽池에 乳鹽이 생겨났다고 하였다.⁴⁵⁾

대력 12년(777) 가을 장마가 농사를 덮치자 京兆尹 黎幹이畿縣의 피

40) 『文苑英華』 권388, 中書制誥10, 吏部郎中, 「授韓滉吏部郎中制」, “勅……可吏部郎中”(1980~1981쪽).

41) 『신당서』 권126, 한황전, “再遷給事中, 知兵部選. 時盜殺富平令韋當, 賊隸北軍, ……”(4434쪽).

42) 『문원영화』 권388, 中書制誥, 戶部侍郎, 「授韓滉戶部侍郎制」(孫逖), “門下……可行尙書戶部侍郎·專判度支, 散官如故. 主者施行”(1978쪽); 『신당서』 권126, 한황전, “遷右丞, 知吏部選, 以戶部侍郎判度支”(4434쪽); 『자치통감』 권224, 대력 6년 是歲 注, “是歲, 以尙書右丞韓滉爲戶部侍郎·判度支. 自兵興以來, 所在賦斂無度, 倉庫出入無法, 國用虛耗. ……自是倉庫蓄積始充”(7218쪽).

43) 『신당서』 권126, 한황전, “吏下及四方輸將”(4434쪽).

44) 『신당서』 권126, 한황전, “會歲數稔, 兵革少息”(4434쪽).

45) 『구당서』 권11, 代宗本紀, 대력 8년 6월 注, 302쪽.

해를 상주하였는데, 한황이 강하게 여간의 상주가 부실하고 말하였다. 이에 御史에게 명하여 巡覆하게 하니 돌아와 諸縣의 무릇 손실이 31,195頃이라고 상주하였다.⁴⁶⁾ 그때 渭南令 劉藻가 한황에게 曲附하여 관하에는 손실이 없다고 하며 경주부와 戶部에 아뢰었다. 分巡御史 趙計가 다시 檢行한 후 상주한 것이 유조와 부합하였다. 代宗이 상주를 살펴보고서 水災가 모두 균일하므로 위남현만 면해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고 御史 朱敖에게 다시 점검하도록 명하니 위남의 손실이 3천여 경이었다. 황제가 주오에게 말하길 “縣令의 직무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이어서 손실이 없어도 마땅히 손실을 입었다고 해야 하거늘 손실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데, 어찌 恤隱의 마음이 있다고 하겠는가. 卿의 이번 순행은 가히 제대로 직무를 본 것이다”라고 하고 有司에게 訊鞫하도록 하니 유조·조계가 모두 죄에 저촉되어 유조는 萬州 南浦[縣] 員外尉로 좌천되고 조계는 豐州 員外司戶로 좌천되었다.⁴⁷⁾ 한황이 권력을 농단하고 당파를 세우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⁴⁸⁾

얼마 지나지 않아 [德宗 대력 14년 윤5월]⁴⁹⁾ 太常卿에 임명되었으나

46) 『신당서』 권126, 한황전, “滉恐有所蠲貸, 固表不實”(4434쪽).

47) 『자치통감』 권225, 대력 12년 10월 조, 7248~7249쪽.

48) 『구당서』 권11, 대중본기, 대력 12년 10월 조, “戶部侍郎·判度支韓滉言解縣兩池生瑞鹽, 乃置祠, 號寶應靈慶池. …… 京兆尹黎幹奏水損田三萬一千頃. 度支使韓滉奏所損不多. 兼渭南令劉藻曲附滉, 亦云部內田不損. 差御史趙計檢渭南田, 亦附滉云不損. 上曰, ‘水旱咸均, 不宜渭南獨免’, 復命御史朱敖檢之, 渭南損田三千頃. 上歎息曰, ‘縣令職在字人, 不損亦宜稱損, 損而不聞, 豈有卹隱之意耶!’, 劉藻·趙計皆貶官”(313쪽); 『신당서』 권126, 한황전, “[趙計亦斥爲豐州司戶員外參軍. 方是時, 潦敗河中鹽池, 滉奏池產瑞鹽. 帝疑, 遣諫議大夫將鎮廉狀, 鎮畏滉, 還乃賀帝, 且請置祠, 詔號寶應靈慶池”(4434쪽); 『자치통감』 권225, 대력 12년 10월 조, “先是, 河中府池鹽多敗, …… 丁亥(9일), ……”(7248쪽); 同, 11월 조, “丙辰, 蔣鎮還, …… 時人醜之”(7249쪽).

49)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대력 14년 윤5월 조, “以戶部侍郎·判度支韓滉爲太常卿, 吏部尚書劉晏判度支·鹽鐵轉運等使. 初, 晏與滉分掌天下財賦, 至是晏

의논이 가라앉지 않아 다시 晉州刺史로 진출되었다.⁵⁰⁾ 몇 달 후 [대력 14년(779) 11월] 蘇州刺史·浙江東西都團練·觀察使에 배수되었고⁵¹⁾ 얼마 후 [건중 2년(781) 6월] 檢校禮部尙書·兼御史大夫·潤州刺史·鎮海軍節度使가 더해졌다.⁵²⁾ 한황이 번진으로 옮긴 후 백성을 安輯하고 租稅⁵³⁾를 균일하게 하니 해를 넘기지 않아 境內가 잘 다스려진다고 칭송되었다.

建中 연간 겨울에 涇[原] 번진의 병사들이 난을 일으키니[涇師之亂] 德宗이 出幸하여 河·汴이 소란스러워지자 한황은 士卒을 훈련시키고 戈甲을 정비[鍛礪]하여 精勁하다고 칭하였다.⁵⁴⁾ [건중 4년(783) 12월] 이희열이 汴州를 함락시키자 한황이 이에 그 銳卒를 뽑아 裨將 李長榮·王栖曜에게 명해 宣武節度 劉玄佐와 함께 掎角을 이루며 討襲하게 하여 寧

都領之”(321쪽); 『신당서』 권126, 한황전, “德宗立, 惡滉掎刻, 徙太常卿. 議者不厭, 乃出爲晉州刺史. 未幾, 遷浙江東·西觀察使, 尋檢校禮部尙書爲鎮海軍節度使”(4434~4435쪽).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250~251쪽 참조. 『자치통감』 권225, 덕종 대력 14년 5월 조에 기술되어 있다.

50) 『자치통감』 권225, 대력 14년 윤5월 조, 7260~7261쪽.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250~251쪽 참조.

51) 『자치통감』 권226, 대력 14년 11월 조, “以晉州刺史韓滉爲蘇州刺史·浙江東·西觀察使”(7272쪽).

52)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건중 2년 6월 조, “以浙江西道爲鎮海軍, 加蘇州刺史韓滉檢校禮部尙書·潤州刺史·充鎮海軍節度使·浙江東西道觀察等使”(329쪽); 『자치통감』 권227, 건중 2년 6월 조, “庚寅, 以浙江東·西觀察使·蘇州刺史韓滉爲潤州刺史·浙江東·西節度使, 名其軍曰鎮海”(7301쪽).

53) 『신당서』 권126, 한황전, “均租調”(4435쪽).

54) 『신당서』 권126, 한황전, “帝在奉天, 淮·汴震騷, 滉訓士卒, 分兵戍河南. (784년3월)既狩梁州, 又獻縑十萬匹, 請以鎮兵三萬助討賊, 有詔嘉勞, 進檢校尙書右僕射, 封南陽郡公. (783년12월)李希烈陷汴州, 滉遣裨將王栖耀·李長榮·柏良器以勁卒萬人進討, 次睢陽, 而賊已攻寧陵, 栖耀等破走之, 漕路無梗, 完靖東南, 滉功多”(4435쪽). 덕종이 봉천에서 梁州로 떠난 것은 흥원 원년(784) 2월이고, 같은 해 3월 양주에 도착하였다(정병준,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동양사학연구』 137, 2016, 37쪽).

陵의 포위를 풀어 宋·汴의 통로를 회복시켰는데, 한황의 공이 컸다.⁵⁵⁾

하지만 關中이 多難한 때로부터 한황은 관할 지역의 關梁을 폐쇄하고 石頭五城을 축조하였으며 京口에서 玉山에 이르기까지 馬牛의 出境을 금지시키고 樓船 戰艦 30여 艘를 건조하여 舟師 5천 인으로 海門을 경유하여 威武를 드러내고 申浦에 이르렀다가 돌아오게 하였다. 또 上元縣의 佛寺·道觀 40여 곳을 毀撤하여 塙壁을 수리하고 建業에서 京峴에 이르기까지 樓雉를 이어지게 하였으며, 佛殿의 자재[材]를 사용하여 石頭城에 館第 수십을 繕置하였다. 당시 한황은 國家가 多難하여 [晉 시대] 永嘉 때 渡江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여[備預] 鑾駕를 맞이하고 또한 경계하여 自守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城 안에 깊이 10丈 우물을 근 100곳이나 뚫으면서 밑으로 江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偏將 丘洿에게 그 일을 감독하게 하니 구잠이 士卒을 혹독하게 다루어 매일 1천 인을 사역시켜 아침에 명을 내리면 저녁에 마치게 하였으며, 성에서 수십 리 안쪽에 있는 先賢의 묘를 대부분 없애게 하였다. 이듬해 정월 李長榮 등의 戍軍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 자신의 심복[親吏] 盧復을 宣州刺史·采石軍使로 삼아 營壘를 더 쌓고 長兵을 教習하게 하였다. 佛寺의 銅鐘으로 弩牙·兵器를 주조하였다. 陳少遊는 당시 揚州를 지키면서 甲士 3천 인을 江에 임하게 하여 크게 사열하였고, 한황 역시 병사 3천 인을 金山에 임하게 하여 진소유와 서로 호응하고 樓船을 江에 띄워 金銀·繪綵를 서로 주고받았다. 덕종이 몽진해서부터 京師로 돌아올 때까지 軍用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道路가 또 막히고 關中에 기근이 든 위에 災蝗까지 덮쳤으나 江南·兩浙이 粟帛을 轉輸해 주어 관부 창고[府]가 비는 달이 없었으므로 조정이 이에 의지하였다.⁵⁶⁾

55) 『자치통감』 권230, 흥원 원년 2월 조, “劉昌守寧陵, 凡四十五日不釋甲. 韓滉遣其將王栖曜將兵助劉洽拒希烈, 栖曜以强弩數千游汴水, 夜入寧陵城. 明日, 從城上射希烈, 及其坐幄, 希烈驚曰, ‘宣潤弩手至矣!’, 遂解圍去”(7401쪽).

興元 원년(784) 檢校吏部尙書가 더해졌고 몇 달 후 [5월]⁵⁷⁾ 또 檢校右僕射가 더해졌다.⁵⁸⁾ 貞元 원년(785) 7월 檢校左僕射·同平章事に 배수되고 使는 모두 이전과 같게 하였다.⁵⁹⁾ 2년(786)⁶⁰⁾ 봄 특별히 晉國公에 봉해

- 56) 『신당서』 권126, 한황진, “聞京都未平, 乃閉關梁, 禁牛馬出境, 築石頭五城, 自京口至玉山, 毀上元道·佛祠四十區, 修塙壁, 起建業·抵京峴, 樓雉相望, 以爲朝廷有永嘉南走事, 置館第數十於石頭城, 穿井皆百尺, 命偏將丘滂督役, 日數千人, 滂虐用其衆, 朝夕辦, 先世丘壘皆發夷, 造樓艦三千柁, 以舟師由海門大閱, 至申浦乃還, 追李長榮等歸, 以親吏盧復爲宣州刺史, 增營壘, 教習長兵, 毀鍾鑄軍器, 陳少游在揚州, 以甲士三千臨江大閱, 滉亦總兵臨金山, 與少游會, 以金繒相餉酬, 然滉握彊兵, 遷延不赴難, 而調發糧帛以濟朝廷者緡屬, 當時實賴之, 李晟方屯渭北, 滉運米饋之, 船置十弩以相警捍, 賊不能剽, 始, 漕船臨江, 滉顧僚吏曰, ‘天子蒙塵, 臣下之恥也’, 乃自舉一囊, 將佐爭負之”(4435~4436쪽). 앞 『구당서』 진소유전 역주의 건중 4년 11월 조 각주 참조.
- 57)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흥원 원년 5월 조, “淮南節度使陳少遊加檢校司徒, 東川節度使李叔明太子太傅, 鎮海軍韓滉檢校右僕射”(342쪽).
- 58) 『자치통감』 권231, 흥원 원년 5월 조, “鹽鐵判官萬年王紹以江·淮繒帛來至, 上命先給將士然後御衫, 韓滉欲遣使獻綾羅四十擔詣行在, 幕僚何士幹請行, …… 又運米百艘以餉李晟, ……”(7428~7429쪽). 정병준, 「唐 德宗代 여러 反亂과 江淮藩鎮의 動搖」, 171쪽 참조. 또 『자치통감』 권231, 흥원 원년 11월 조, “議者又言, ‘韓滉聞鑾輿在外, 聚兵脩石頭城, 陰蓄異志’, 上疑之, 以問李泌, 對曰, ‘滉公忠清儉, 自車駕在外, 滉貢獻不絕, 且鎮江東十五州, 盜賊不起, 皆滉之力也’. 所以脩石頭城者, 滉見中原板蕩, 謂陛下, 將有永嘉之行, 爲迎扈之備耳. …… 上謂泌曰, ‘韓滉乃能化陳少遊貢米矣’, 對曰, ‘豈惟少遊, 諸道將爭入貢矣’”(7447~7449쪽).
- 59)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원년 7월 조, “以鎮海軍·浙江東西道節度使韓滉檢校尙書左僕射·同平章事·江淮轉運使”(349쪽); 『자치통감』 권231, 흥원 원년 12월 조, “淮南大將王韶欲自謂留後, 令將士推己知軍事, 且欲大掠, 韓滉遣使謂之曰, ‘汝敢謂亂, 吾卽日全軍渡江誅汝矣!’, 韶等懼而止. 上聞之善, 謂李泌曰, ‘滉不惟安江東, 又能安淮南, 眞大臣之器, 卿可謂知人!’, 庚辰, 加滉平章事·江淮轉運使, 滉運江·淮粟帛入貢府, 無虛月, 朝廷賴之, 使者勞問相繼, 恩遇始深矣”(7450쪽).
- 60) 『자치통감』 권231, 정원 2년 2월 조, “崔造與元琇善, 故使判鹽鐵, 韓滉奏論鹽鐵過失”(7468쪽); 同 권232, 정원 2년 4월 조, “關中倉廩謁, 禁軍或自脫巾呼於道曰, ‘拘吾於軍而不給糧, 吾罪人也!’, 上憂之甚, 會韓滉運米三萬斛至陝, 李泌卽奏之. 上喜, 遽至東宮, 謂太子曰, ‘米已至陝, 吾父子得生矣!’”(7469쪽).

졌다. 그 해 11월 京師에 내조하였다.⁶¹⁾ 그 때 右丞 元琇가 判度支로 있었는데, 關輔에 가뭄이 들어 흉작이 들자 江淮의 租米를 운송하여 京師에 공급하기를 청하였다. 황제는 한황이 浙江東·西節度로 있으면서 평소 威名을 드러냈으므로 江淮轉運使를 더해 주어 운수의 일을 전적으로 감독하게 하려고 하였다. 원수는 한황의 성격이 세고 괴팍하여 함께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條奏하여 한황이 江南의 米를 揚子까지 무릇 18리를 督運하고 揚子 以北은 모두 원수가 주관하게 하자, 한황이 원수에게 크게 노하였다. 원수는 京師의 錢重·貨輕이 큰 문제라고 여기고 江東 監院에서 收獲한 見錢 40여 만 貫을 轉送하여 관중으로 들이도록 하였다. 한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誣奏하여 말하길 “1천 錢을 京師로 운반하는데 소비되는 錢이 1만에 이르므로 국가에 손해입니다”라고 하며 그만두길 청하였다. 황제가 원수에게 묻자 원수가 상주하여 말하길 “1천의 무게는 약 1斗 米와 같습니다. 江南에서 수로로 경사에 이르기까지 1천을 운반하는데 3백을 사용할 뿐입니다. 어찌 1만에 이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렇게 여기고 中使에게 手詔를 가지고 가서 錢을 운송하게 하였으

61)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2년 11월 조, “兩浙節度使韓滉來朝”(355쪽); 『신당서』 권126, 한황전, “貞元元年, 加檢校左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江淮轉運使, 封鄭國公. 以繕治石頭城, 人頗言有窺望意, 雖帝亦惑之. 會李泌間關辯數, 帝意乃解. 二年, 更封晉. 是歲入朝. 滉既宿齒先達, 頗簡倨, 接新進用事, 不能滿其意, 衆怨之. 獻羨錢五百餘萬緡, 詔加度支諸道轉運·鹽鐵等使. 右丞元琇判度支也, 以關輔旱, 請運江南租米西給京師. 帝委滉專督之, 而琇畏其剛愎難共事, 請自江至揚子, 滉主之, 揚子以北, 自主之. 滉由是銜琇. 會琇以京師錢重貨輕, 發江東鹽監院錢四十萬緡入關. 滉給奏, ‘運錢至京師, 率費萬致千, 不可從’, 帝責琇, 琇曰, ‘千錢其重與斗米均, 費三百可致’, 帝以諭滉, 滉執不可. 至是, 誣劾琇饋米與淄青李納·河中李懷光. 帝怒, 不復究驗, 貶琇雷州司戶參軍. 左丞董晉白宰相劉滋·齊映曰, ‘昨關輔用兵, 方蝗旱, 琇不增一賦, 而軍興皆濟, 可謂勞臣. 今被謫無名, 刑濫人懼, 假令權臣逞志, 公胡不請三司鞫之?’, 滋·映不能用. 給事中袁高抗疏申執, 滉指爲黨與, 寢不報”(4436쪽); 『자치통감』 권232, 정원 21년 11월 조, “韓滉入朝, [호삼성 주: 自京口入朝]”(7474쪽).

나 한황이 강경하게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 해(즉 정원 2년) 12월 한황에게 度支諸道轉運鹽鐵等使를 더해 주자⁶²⁾ 마침내 오랜 분노를 드러내어 여러 차례 원수를 誣奏하여 雷州司戶로 좌천시켰다.⁶³⁾ 그 처벌이 중하자 온 조정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몰래 논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尙書左丞 董晉이 宰臣 劉滋·齊映에게 말하길

元 좌승이 홀연히 貶責되었으나 죄명을 알 수 없다. 用刑이 한번 남발되면 누가 危懼하지 않겠는가? 만약 權臣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相公께서는 어찌 三司에서 詳斷하도록 주청하지 않는가. 작년에 關輔에서 군사를 동원할 때 바야흐로 蝗災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國計를 총괄하면서 주야로 근심하고 노력하여 군대에 공급하며 1賦도 늘이지 않았음에도 軍國이 모두 구제되었는데, 이는 가히 勞臣이라 할 수 있다. 지금 播逐되는 것을 보니 人心을 잃을까 우려된다. 인심이 한번 동요하면 뜻을 품은 자가 분연히 일어날[聞雞起舞] 뿐이다. 생각건대 相公에게 痛惜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다. 유자·제영은 단지 과실이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給事 袁高가 또 抗疏하여 申理하였으나 한황이 무고하여 朋黨이라고 하자 덮어두고 답하지 않았다.

당시 兩河에서 전쟁이 그쳐 中土가 평온해지자 한황이 上言하였다. 즉

吐蕃이 河湟을 훔친 지가 오래되었다. 大曆 이전에 中國이 多難하여 그들

62)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12월 조, 7475쪽.

63)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2년 12월 조, “以韓滉兼度支·諸道鹽鐵轉運使. …… 庚申, 以給事中·同平章事崔造爲右庶子. 貶尙書右丞·度支元琬爲雷州司戶, 爲韓韓誣奏, 人以爲非罪, 諫官屢論之”(355쪽);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12월 조, 7476쪽.

이 마음대로 침략하였다. 신이 듣건대 근년 이래 군사가 점점 약해져서 서쪽으로 大食의 강성함에 압박을 받고 북쪽으로 迴紇의 무리에게 병들고 동쪽으로 南詔를 방비해야 하는데, 헤아리건대 그 나누어 지키는[分鎮] 것 이외에 전투 병은 河·隴에 5~6만이 있을 뿐이다. 國家가 3~5인의 良將에게 명해 10만 병사를 長驅하여 涼·鄯·洮·渭에 모두 堅城을 수축하게 하고 각각 2만 인을 배치하면 족히 守禦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청컨대 當道에 비축한 財賦를 饋運의 물자로 하면 3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연후에 營田하여 粟을 쌓아두고 농사지며 싸우면 河·隴 20여 주를 수복하는 것을 열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하니⁶⁴⁾ 황제가 그 말을 심히 받아들였다. 한황이 입조할 때 汴州를 경유하면서 劉玄佐와 두텁게 연을 맺고 장차 그를 추천하여 邊事를 맡기게 하려고 하였다.⁶⁵⁾ 유현좌는 그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허락하였다. 입

64) 『자치통감』 권232, 7482, 정원 3년 3월 조, 7482쪽.

65) 『신당서』 권126, 한황전, “劉玄佐不朝, 帝密詔滉諷之. 及過汴, 玄佐素憚滉, 修屬吏禮. 滉辭不敢當, 因結爲兄弟, 入拜其母, 置酒設女樂. 酒行, 滉曰, ‘宜早見天子, 不可使夫人白首與新婦子孫墳宮掖也’, 玄佐泣悟. 滉以錢二十萬緡爲玄佐辦裝, 又以綾二十萬犒軍. 玄佐入朝, 滉薦可任邊事. 時兩河罷兵, 滉上言, ‘吐蕃盜河·湟久, 近歲寢弱, 而西迫大食, 北扞回鶻, 東抗南詔, 分軍外戰, 兵在河·隴者不過五六萬, 若朝廷命將, 以十萬衆城涼·鄯·洮·渭, 各置兵二萬爲守禦, 臣請以本道財賦饋軍, 給三年費, 然後營田積粟, 且耕且戰, 則河·隴之地可翹足而復’, 帝善其言, 因訪玄佐, 玄佐請行. 會滉病甚, 張延賞奏減州縣冗官, 收祿俸, 募戰士西討. 玄佐慮延賞斬削資儲, 辭犬戎未豐, 不可輕進, 因稱疾. 帝遣中人勞問, 臥受命. 延賞知不可用, 乃止. 滉尋卒, 年六十五, 贈太傅, 諡曰忠肅”(4436~4437쪽); 『자치통감』 권232, 정원 21년 11월 조, “韓滉入朝. …… 韓滉過汴, [劉]玄佐重其才望, …… 壬寅, 玄佐與陳許節度使曲環俱入朝”(7474~7475쪽). 당시 조정에서는 토변에 대한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정병준, 「四王之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235~236쪽; 同, 『舊唐書』 권133, 李晟傳 譯註, 『동국사학』 58, 2015, 297~298쪽 등 참조.

조하여 황제가 물으니 처음에는 자못 명을 받들었으나 한황이 질병으로 자택으로 돌아가자 유현좌의 뜻이 나태해져 마침내 변경 임무를 사양하면서 犬戎이 아직 쇠퇴하지 않아 가볍게 나아갈 수 없다고 장황하게 말하였다.⁶⁶⁾ 한황이 貞元 3년(787) 2월 질병으로 薨하자⁶⁷⁾ 마침내 그 일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때 나이가 65세였다. 황제가 오래도록 애도하며 3일을 廢朝하고 太傅로 추증하며 布帛米粟을 차등있게 부의하였다.

한황은 宰相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美名이 있었고 사귀는 이는 모두 당시의 뛰어난 선비(儒彦)였고 公直하지 않으면 親密해하지 않았다. 성품이 節儉하고 奉公에 뜻을 두었으며 의복과 침구(茵衽)는 10년에 한번 바꾸고 거처는 좁고 검소하여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였다.⁶⁸⁾ 동생 [韓]涇은 일찍이 향리 집(里宅)의 廊宇를 增修하였는데, 한황이 江南에서 이르

66)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12월 조, “韓滉素與[李]晟善, 上命滉與劉玄佐諭旨於晟, 使與[張]延賞釋怨. 晟奉詔, 滉等引延賞詣晟第謝, 結謂兄弟, 因宴飲盡歡, 又宴於滉·玄佐之第亦如之. 滉因使晟表薦延賞爲相”(7477쪽); 同 권232, 정원 3년 정월 조, “韓滉性苛暴, 方爲上所任, 言無不從, 他相充位而已, 百吏救過不贖. 渾雖爲滉所引薦, 正色讓之曰, …… 滉愧, 爲之少霽威嚴”(7480~7481쪽); 同 권232, 정원 3년 윤5월 조, “初, 韓滉薦劉玄佐可使將兵復河·滉, 上以問玄佐, 玄佐亦贊成之. 滉薨, 玄佐奏言, ……”(7485쪽).

67)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2년 12월 조 “度支鹽鐵轉運使·鎮海軍節度·浙江東西道觀察等使·檢校左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晉國公韓滉卒, 贈太傅. 以果州刺史白志貞爲潤州刺史·兼御史大夫·浙西觀察使, 宣州刺史皇甫政爲越州刺史·浙東觀察使”(355쪽);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 2월 조, 7481쪽.

68) 『신당서』 권126, 한황전, “滉雖宰相子, …… 甚暑不執扇, 居處陋薄, 取庇風雨. 門當列戟, 以父時第門不忍壞, 乃不請. 堂先無挾廡, 弟涇稍增補之, 滉見即徹去, 曰, ‘先君容焉, 吾等奉之, 常恐失墜. 若摧圮, 繕之則已, 安敢改作以傷儉德?’, 居重位, 清絮疾惡, 不爲家人資產. 自始仕至將相, 乘五馬, 無不終櫪下. 好鼓琴, 書得張旭筆法, 畫與宗人[韓]幹相埒. 嘗自言, ‘不能定筆, 不可論書畫, 以非急務, 故自晦, 不傳於人. 善治易·春秋, 著通例及天文事序議各一篇. 初判度支, 李晟以裨將白軍事, 滉待之加禮, 使其子拜之, 厚遺器幣鞍馬. 後晟終立大功. 滉幼時已有美名, 所與游皆天下豪俊. 晚節益苛慘, 故論者疑其飾情希進, 既得志, 則疆肆, 蓋自其性云”(4437~4438쪽).

러 [이를 보고] 즉시 철거하게 하며 말하길 “先公께서 이곳에 사시고 우리가 받들면서 항상 失墜를 두려워하였고 부서지면 수리할 뿐이었는데, 어찌 감히 改作하여 儉德을 손상하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높은 지위에 오른 이후 더욱 淸儉하고 惡을 싫어하였으며 闕漏는 미봉하여 적당히 하고 家人의 資産은 한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入仕한 처음부터 卿相에 이르는 무릇 40년 동안 이어서 말을 탄 것이 5필이며 모두 늙어죽을 때까지 탔다. 더욱이 글씨에 뛰어나고 丹青에 능하였는데, 繪事는 急務가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그 능력을 감추고 아무에게도 전수하지 않았다. 『易象』과 『春秋』를 좋아하여 『春秋通例』와 『天文事序議』 각 1卷을 저술하였으나 前輩가 일찍이 달성한 것이 점점 後進에 이르러 闕어지게 되었다고 여겼다. 만년에 京師에 이르러 丞郎卿佐⁶⁹⁾를 대하는 것이 자못 거만하였으므로 무리가 불평하였다.

그가 浙右에 있을 때⁷⁰⁾ 政令이 明察하였으나 말년에 지나치게 엄하고 급하여 管內[巡內] 婺州 속현[傍縣]⁷¹⁾의 혹자가 자신의 영을 어기자 이곳까지 주살하여 죽은 자가 수십~백 인에 이르렀다. 또 推覆官에게 境內를 分察하게 하여 正황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極法에 처하게 하니 誅殺하는 것이 잔인하고 한번 재판하면 수십 인을 죽였으며 하루도 그치는 날이 없었다. 비록 영을 내려 금지시켰다고 해도 冤濫이 끊이지 않았다. 侂자들이 말하길 한황은 一方을 다스리면서 자못 勤績을 쌓았으나 어릴 때부

69) 앞의 정원 2년 11월에 入朝하였다고 한 기사의 각주에서는 “是歲入朝。滉既宿齒先達，頗簡倨，接新進用事，不能滿其意，衆怨之”라고 보인다.

70) 『신당서』 권126, 한황전, “(賊已攻寧陵，栖耀等破走之，漕路無梗，完靖東南，滉功多)。時里胥有罪，輒殺無貸，人怪之。滉曰，‘袁晁本一鞭背史，禽賊有負，聚其類以反，此輩皆鄉縣豪黠，不如殺之，用年少者，惜身保家不爲惡’，又以賊非牛酒不嘯結，乃禁屠牛，以絕其謀。婺州屬縣有犯令者，誅及鄰伍，坐死數十百人。又遣官分察境內，罪涉疑似必誅，一判輒數十人，下皆愁怖”(4435쪽).

71) 婺州에는 傍縣이라는 縣名이 없다.

터 貞廉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만년에 다스림이 너무 苛慘하였는데, 몸소
도달하지 못하면 情을 분식하여 올라서고 그 뜻을 얻은 후 本質이 드디어
드러났다. 아들로는 [韓]羣, [韓]皐가 있다. 한군은 官이 考功員外郎에 이
르렀다.